

- |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(제4종 208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,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(제4종 208호) |
| <p><u>< 삭 제 ></u></p>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(제4종 209호)</u> | |

□ 개정내용

-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* 발굴

* 「의료관리법」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,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등

-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명 수정*

* 예. (종전)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서선발생 장치의 생산·판매·사용·이동사용 허가
→ (개정)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서선발생 장치의 생산·판매·사용(소지·취급 포함)·이동사용 허가

-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*

* 「원자력안전법」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 - 신설된 면허 중 '25.12.31. 이전 득한 면허는 '26.1.1.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부과